



#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2019. 6.



# 목 차

제1장 총칙	4
제1절 목 적	4
제2절 적용범위	4
제3절 기본원칙	4
제2장 일반적 설계기준	6
제1절 취약범죄 유형 진단을 위한 사전검토	6
제2절 자연감시를 위한 설계기준	6
제3절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7
제4절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7
제5절 활동성 지원을 위한 설계기준	7
제6절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8
제3장 현장 요소별 설계기준	8
제1절 조경식재	8
제2절 조명시설	9
제3절 방범용 감시카메라	9
제4절 비상벨	10
제5절 방범창	10
제6절 방범문 및 안전장치	11
제7절 안내판 등 사인물	11
제8절 담장	11

제4장 대상 시설별 설계기준	12
제1절 생활공간내 공공시설	12
제1조 보행도로	12
제2조 방음벽	12
제3조 주차장	13
제4조 광장 및 공개공지	13
제5조 근린공원	13
제6조 수변공간	14
제7조 공중화장실	15
제8조 상업(숙박)·유흥지역 가로 및 골목길	15
제2절 아파트 단지	16
제1조 출입구	16
제2조 출입문	16
제3조 승강기, 복도, 계단	17
제4조 건물외벽	17
제5조 주차장	18
제6조 경비실	18
제7조 복리시설	18
제3절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19
제4절 소매점(편의점)	20
제5절 문화·교육·노유자·관광휴게시설	20
제5장 주민활성화 지원	21

#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가이드라인

## 제1장 총 칙

### 제1절 목 적

1-1. 주민이 자주 이용하는 생활공간과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 방향과 원칙을 정하여 충북도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 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절 적용범위

1-2-1. 도로, 공원, 광장 등 생활공간내 공공시설과 아파트 단지, 주택, 소매점 등 건축물 등에 대한 범죄예방 설계를 제시한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에 따를 것을 권장한다.

- 공간적 범위 : 도민이 일상생활을 하는 주된 생활공간
- 적용대상
  - 공공시설 : 도로, 광장 및 공개공지, 근린공원, 수변공간 등
  - 건 축 물 : 아파트단지,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준주택(고시원·오피스텔·기숙사), 소매점(편의점), 문화·교육·노유자시설·관광휴게시설

1-2-2. 이 가이드라인은 지역특성, 취약범죄 유형, 주변현황 및 여건에 따라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자발적으로 보다 강화된 기준을 적용 하는 것을 권장한다.

1-2-3. “충청북도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제7조에서 정한 사업은 이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제3절 기본원칙

1-3-1. 자연적 감시 :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최대화하여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조경, 조명을 배치하여야 한다.

- 조망권 확보를 통한 사람의 눈에 의한 자연스러운 감시
- 가시권을 최대화 시킬 수 있도록 건물이나 시설물 등을 배치 설계
- 이웃 주민이나 외부인의 활동 및 관찰이 용이하도록 설계
- 주변의 조망이 용이하도록 은폐장소를 최소화한 공간 및 배치계획
- 적절한 조도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 설치를 통한 야간 가시권 확보

1-3-2. 접근통제 : 물리적·심리적 접근 통제가 가능하도록 입구 또는 출구, 울타리, 조경 및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 외부인의 비정상적인 접근을 막아 잠재적, 우발적 범죄심리 억제
- 출입을 일정한 공간으로 유도하여 내부인이 확인이 용이하도록 설계
- 경비원, 인적경비 등을 활용한 전형적인 조직적 통제
- 방범용 감시카메라와 같은 보안설비 등을 활용한 기계적 통제
- 공간배치, 장애물 설치, 공간구획 등을 통한 자연적 통제

1-3-3. 영역성 강화 : 사적영역을 제외한 공공의 공간은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하거나 점유 할 수 있도록 영역성을 강화하여야 한다.

-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역할을 인식할 수 있도록 공간 및 경계를 구분
- 공간의 위계 설정 및 구성(공적공간-전이공간-사적공간)이 되도록 설계
- 공간이나 시설에 영영성 확보를 위한 시설물 설치 또는 디자인 변화 계획
- 담장·포장·색채·표지판 등을 통해 영역 구분 강화
- 환경의 통일감 강화를 통한 사각지대 및 고립지역의 개선

1-3-4. 활동성 지원 : 주민의 교류와 활동성을 강화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하여 주민의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 공공장소에 있어 시설의 배치와 디자인을 통한 공간의 활성화
- 공간 및 시설에 대한 주민들의 애착심과 이용을 향상시켜 자연적 감시제고
- 다세대가 사용할 수 있도록 시간별·시설별 등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계획
- 다양한 행위를 유발할 수 있도록 공간과 시설을 디자인
- 활용성 제고를 통한 사람에 눈에 의한 감시효과 향상

1-3-5. 유지관리 : 조성된 공간과 건축물은 지속관리를 통하여 쾌적한 환경과 범죄예방 기능이 유지되어야 한다.

- 공간 및 시설의 정돈된 미관 및 관리를 통해 심리적 안전감 제고
- 불량한 환경에 대한 지속적 정비를 통해 미관개선 유지

- 초기 설계된 CPTED원리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계획
- 지속적인 관리가 가능하게 하여 사용자의 일탈행동을 자제하도록 계획
- 안내문 또는 표식 등을 통한 관리지역으로서 인식 제고

## 제2장 일반적 설계기준

### 제1절 취약범죄 유형 진단을 위한 사전검토

2-1-1. 해당 지역 및 특정 공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범죄유형의 분석을 통하여 예측되는 범죄가 무엇인지 파악하고, 이를 예방하기 위해 어떠한 공간설계가 가장 적합한지 판단하여야 한다.

2-1-2. 해당 지역의 범죄유형 분석 및 평가 그리고 그에 대응하는 설계기준을 적용하는데 있어 관련 분야 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제2절 자연감시를 위한 설계기준

2-2-1. 도로 등 공적공간은 시각적 접근과 노출을 통해 주민 등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계획한다.

2-2-2. 건축물은 도로 등 공적공간의 시각적 접근과 노출이 가능 하도록 배치하여 주민 등에 의한 자연적 감시와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치한다.

2-2-3. 건물의 현관이나 주차공간의 경우 주변 시야를 방해하는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계획하고, 충분한 조명과 범죄 방어시설을 계획한다.

2-2-4. 건물 출입구, 승강기 홀, 계단 홀, 외부와 면한 창문 및 계단 등은 개방형 구조로 디자인한다.

2-2-5. 조경식재는 자연적 감시를 위해 그 수종과 높이를 고려한다.

2-2-6. 야간에 가시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조명은 적절한 조도와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특히, 골목, 공원, 놀이터 등 공공장소의 조명설계는 적절한 조도와 색온도를 유지하여 사전에 범죄 유발 요인을 감소시키도록 해야 한다.

2-2-7. 주택가 도로 주변에 소매점, 편의점과 같은 상업시설을 배치 하여 주민에 의한 자연적인 감시가 이뤄지도록 한다.

### 제3절 접근통제를 위한 설계기준

2-3-1. 자연적 감시기준 적용이 어려운 경우 전자출입시스템, 출입 차단기, 방법용 감시카메라 등 기계적으로 접근통제 할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2-3-2. 주택단지 또는 시설물 출입구는 통제와 인지가 용이하도록 적절한 상징물 및 시설을 계획한다.

2-3-3. 사적영역으로의 접근을 통제하기 위해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 수목 등의 조경시설을 계획한다.

2-3-4. 건축물의 외벽은 범죄자의 침입이 용이한 시설이 설치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불가피하게 시설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침입에 이용되지 않도록 방범시설과 함께 설치한다.

2-3-5. 시설물의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게 하여 야간에도 식별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제4절 영역성 확보를 위한 설계기준

2-4-1. 공적공간과 사적공간 간의 위계를 명확히 하여 사용자가 공간의 성격을 확실하게 인지할 수 있도록 개별 공간의 영역성을 확보하는 설계를 하여야 한다.

2-4-2. 외부와의 경계부나 출입구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 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 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의식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4-3. 지역의 특성 및 성격 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안내판 설치, 색채·재료·조명계획으로 공간의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이미지 강화 방안을 고려하여야 한다.

2-4-4. 야간에 공적공간과 사적공간을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영역성 확보에 유익한 조경 및 조명계획을 한다.

2-4-5. 건축물의 형태(외관), 재료 및 색채 등을 통일하여 영역성을 확보한다.

### 제5절 활동성 지원을 위한 설계기준

2-5-1. 공동이용시설(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은 사람들의 이용이 활성화 되도록 외부 공공공간과 유기적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2-5-2. 다양한 계층의 이용자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시설의 특성 및 기능을 고려한 커뮤니티 공간을 배치한다.

2-5-3. 골목길은 주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여 주민들의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유도한다.

2-5-4. 범죄예방 환경설계 시 마을 순찰, 안심 귀가, 안전모니터링, 골목길 활성화 등 주민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6절 유지관리를 위한 설계기준

2-6-1. 시설물은 지속적인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2-6-2.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한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계획한다.

2-6-3. 내구성이 강한 재료의 사용을 통해 파손 및 훼손을 미연에 방지하도록 계획한다.

2-6-4. 시설물에는 관리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번호를 부여하여 인식 및 유지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2-6-5. 범죄예방 환경설계시 시설물의 당초 기능이 유지되도록 정기점검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제3장 현장 요소별 설계기준

## 제1절 조경식재

3-1-1. 조경수목은 보행자의 시선연결 확보,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 공간 제거, 가로 시설물(조명, 방범용 감시카메라, 안내사인물 등) 기능 유지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3-1-2. 수목은 밀집식재나 차폐식재로 사각지대나 고립지대가 발생 하지 않도록 식재한다.

3-1-3. 주출입구, 경비실 주변, 단독주택 정원등은 수목으로 시야를 방해받지 않고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식재한다.

3-1-4. 보행로나 산책길 주변에는 보행자 시선확보를 위하여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안쪽으로는 지하고 2m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한다.

3-1-5. 건물 주변에 식재되는 조경 수목은 1.5m이상 거리를 두고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나무를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 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3-1-6. 담장 및 놀이공간 주변 관목은 은신공간을 형성하지 않고 시야를 확보할 수 있도록 1m 이내로 낮은 조경을 식재한다.

3-1-7. 공원내 둔덕을 조성 할 경우 시야선 확보를 위하여 눈높이 이하의 수목을 식재한다.

## 제2절 조명시설

3-2-1. 야간 가시성 확보를 위한 적절한 조도의 조명을 설치한다.

3-2-2. 진입공간, 표지판, 출입구 등에는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를 인도한다.

3-2-3. 가로 조명은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 빛이 닿는 범위가 겹치도록 계획하고, 상대방을 인식할 수 있는 적정 밝기를 유지해야 한다.

3-2-4. 높은 조도의 조명보다 낮은 조도의 조명을 적절히 설치하여 그림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일정 수준의 균일한 조도를 확보한다.

3-2-5. 야간 보행동선을 따라 바닥 조명 설치를 권장한다.

3-2-6. 수목의 차폐로 인한 은닉공간 최소화를 위한 수목 투사등 설치를 권장한다.

3-2-7. 범죄로부터 안전한 공간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문구를 비추는 고보조명을 권장한다.

3-2-8. 조명은 수목에 가리지 않는 곳에 설치하며, 수목에 의해 조명이 가리는 경우 볼라드 조명이나 국부조명을 권장한다.

3-2-9. 가로등의 경우 “빛 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을 따른다.

## 제3절 방범용 감시카메라

3-3-1.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범죄에 취약한 공간을 중심으로 설치하되, 사생활 침해 및 인권보호를 고려하여 설치한다.

3-3-2.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영상판독이 가능한 고화질 카메라를 설치하고, 어둡고 근거리 감시인 경우에는 적외선 카메라를, 어둡고 원거리인 경우 저조도 카메라를 설치한다.

3-3-3. 주요시설에는 동작감응형과 같은 지능형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를 고려한다.

3-3-4.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상시 모니터링이 되는 시스템을 권장한다.

3-3-5. 방범용 감시카메라가 설치된 곳은 안내표지판을 부착한다. 표지판은 채도가 높은 노란색, 주황색이나 야간인식을 고려하여 형광기능을 추가하거나 또는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한다.

3-3-6. 방법용 감시카메라는 범죄예방을 위한 보조수단으로 사용하고 범죄 발생이 많은 지역에서는 경비원, 경찰력에 의한 범죄예방을 추진한다.

3-3-7. 방법용 감시카메라 설치가 어려운 은폐된 사각지대는 반사경 설치를 고려한다.

3-3-8. 이외의 사항은 “충청북도 영상정보 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을 준수한다.

※ 감시카메라 설치기준

- 주요 공간, 고립지역, 사각지대를 중심으로 설치
- 조경이나 시설물이 감시카메라 감시범위를 가리지 않게 설계

※ 야간감시를 위해 조명시설을 함께 설치

- 영상판독이 가능한 고화질 감시카메라 설치
- 회전이 가능한 카메라 설치를 권장

## 제4절 비상벨

3-4-1. 범죄 취약공간들을 중심으로 설치하며, 긴급 시 쉽게 이용 할 수 있도록 차별화된 색상과 디자인을 반영한다.

3-4-2. 양방향 통신이 가능한 비상벨 설치를 고려하고, 경찰·경비업체 또는 관리주체 등과 시스템이 연계되도록 한다.

3-4-3. 비상벨을 누를 경우 경보음이 울리거나 조명이 작동해서 주변에서 상황을 확인 할 수 있도록 경광등이나 음성 지원시설의 통합 설치를 고려한다.

3-4-4. 비명소리 등 이상음원 감지가 가능한 비상벨을 설치·운영하여 범죄예방의 실효성을 확보한다.

3-4-5. 비상벨은 주기적으로 작동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5절 방법창

3-5-1. 세대의 방법창, 안전잠금장치는 일정한 침입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한다.

3-5-2. 저층부, 편복도에 접한 창문은 방법창, 잠금장치, 침입경보기, 방법유리 설치를 권장한다.

3-5-3. 가로, 세로바에 강철빔 등 보강재가 삽입되어 절단이 어려운 방법창을 설치한다.

3-5-4. 방법창은 일반유리보다 방법유리 사용을 고려한다.

## 제6절 방법문 및 안전장치

- 3-6-1. 창문, 출입문 셔터는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 3-6-2. 출입문에는 신문, 우유투입구 등을 설치하지 않는다, 부득이 설치 할 경우 외부에서 열 수 없는 구조로 한다.
- 3-6-3. 도어체인, 보조키, 투시경, 창문경보기, 비상벨, 비디오폰, 적외선 방법 경보기, 충격진동감지 경보기, 도어경보기, 경광사이렌, 유리 방탄필름, 방법문 등 적절히 사용한다.
- 3-6-4. 방법문은 화재 시 피난방향으로 열리는 구조로 한다.
- 3-6-5. 방법장치들은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위기 시 미작동이 없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7절 안내판 등 사인물

- 3-7-1. 주요 진입로에 정돈된 안내시설을 설치하여 영역성을 강화 하고, 신속한 정보 전달로 범죄로부터 노출을 최소화 한다.
- 3-7-2. 이용자의 방향감을 제공하거나 일정 지역의 사용용도를 명확 하게 하기 위해 안내 시설물은 잘 보이는 위치와 높이에 설치한다.
- 3-7-3. 안내표지는 간결한 서체, 분명한 대비의 색채, 이해하기 쉬운 상징기호등을 사용하여 계획하고 조명을 통해 야간에도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 3-7-4. 공간구조가 복잡하거나 위치확인이 곤란한 지역에서는 목적지로 쉽게 이동 할 수 있도록 현재 위치를 포함한 위치정보 안내시설을 설치한다.
- 3-7-5. 범죄 예방효과 증대를 위하여 각종 방법시설과 인접해서 “감시카메라 녹화 중”, “범죄안전구역”, “비상벨 설치 위치” 등 범죄예방 사인물을 계획한다.

## 제8절 담장

- 3-8-1. 담장은 자연적 감시가 용이한 구조의 생 울타리나 투시형 담장으로 계획한다.
- 3-8-2. 외부인 침입을 물리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담장의 경우 투시형으로 높이 1.8m 이상 계획한다.
- 3-8-3. 난간형 담장을 설치할 경우 50%이상 내·외부가 투시될 수 있는 구조

를 적용하고, 접근통제를 위하여 수직살의 사용을 권장한다.

3-8-4. 조경담장 높이가 낮을 경우에는 밀식 식재하고, 높을 경우에는 시야 통로가 확보되게 식재한다.

3-8-5. 담장이나 벽면 등에는 지역 이미지와 환경적 특징을 고려한 밝은 분위기의 도색을 권장한다.

## 제4장 대상 시설별 설계기준

### 제1절 생활공간내 공공시설

#### 4-1-1. 보행도로

4-1-1-1. 범죄위험이 높은 지역의 보행도로(이하 “보행도로” 라 한다)는 가능한 이용이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계획한다.

4-1-1-2. 보행도로와 주변 시설이 사각지대가 없도록 하여 이용자가 진행방향을 확인할 수 있게 계획한다.

4-1-1-3. 막다른 보행도로는 시점에서 종점이 한눈에 보이도록 가능한 일직선으로 계획하고 적절한 보행폭을 확보한다.

4-1-1-4. 오토바이나 차량을 이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보행도로변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적정 보도폭을 계획한다.

4-1-1-5. 교차로, 코너부의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를 계획한다.

4-1-1-6. 도로 폭원 및 보행량에 따라 적절한 조명을 설치한다.

4-1-1-7. 한적한 보행도로 및 자전거 도로에는 방법용 감시카메라, 비상전화, 비상벨, 비상경보기 설치를 고려한다.

4-1-1-8. 보행도로는 연석, 포장, 보호펜스 등 적절한 방법으로 차도 및 자전거도로와 명확하게 구분해서 배치한다.

4-1-1-9. 보행도로의 볼라드는 보행을 방해하지 않으면서 보행공간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설계하며, 볼라드 또는 보호펜스는 야간 안전을 고려한 디자인을 적용한다.

#### 4-1-2. 방음벽

4-1-2-1. 투시형 소재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한다.

4-1-2-2. 밀폐공간을 가급적 지양하고 부득이한 경우 개방형 구조로 설계하여 시야를 확보하고 불안감을 완화한다.

4-1-2-3. 방음벽의 내구성 및 기능, 관리 측면뿐만 아니라 안전성 측면을 고려하여 계획한다.

### 4-1-3. 주차장

4-1-3-1. 지상 주차공간은 주변 건물과 도로, 보도와 근접 배치하여 활동에 의한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1-3-2. 차량출입 및 차량정보, 주차상황에 대한 상시관찰이 가능 하도록 진 출입로를 단일화 하고 차량번호 인식이 가능한 통제시스템 설치를 권장한다.

4-1-3-3. 주차면과 차로는 공간의 영역성 구분을 위해 바닥의 재질과 디자인을 달리하여 공간의 영역성이 명확히 구분한다.

4-1-3-4. 방법용 감시카메라는 차로와 주차구획을 감시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1-3-5. 여성우선주차공간은 가장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한다.

4-1-3-6. 야간 안전을 고려해 조명시설을 충분히 설치하고 출입구와 주차구역을 중심으로 방법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 4-1-4. 광장 및 공개공지

4-1-4-1. 광장은 개방되는 구조로 유동인구가 많은 중심지에 계획하고 폐쇄적 공간에 소규모 광장을 계획한다.

4-1-4-2. 공개공지는 주민 영역의식 강화와 활동 활성화를 위해 주민이용시설을 계획한다.

4-1-4-3. 광장 및 공개공지 주변의 가로수와 조경 등은 자연 감시를 차단하지 않도록 설계한다.

4-1-4-4. 이용객들이 많아 혼잡할 시 현 위치를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구역별 안내판 및 표지판 설치를 계획한다.

4-1-4-5. 광장은 관리용 외에는 차량출입을 통제한다. 블라드는 다양한 행태로 디자인하여 공간 활성화에 기여한다.

### 4-1-5. 근린공원

4-1-5-1. 공원 출입구는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하고 출입구를 쉽게 인식 할 수 있도록 문주, 상징물을 계획한다.

4-1-5-2. 출입구 바닥은 레벨의 변화, 포장재질, 색채의 차별화로 변화를 주어 영역성을 강화한다.

4-1-5-3. 공원 입구에 공원이용 안내사항과 공원구조 등을 표시한 안내 사인

물을 계획한다.

4-1-5-4. 공원 경계부는 내부와 상호 감시가 가능하도록 관목 위주의 식재를 계획한다.

4-1-5-5. 공원 경계에 담장 또는 펜스를 설치 할 경우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높이와 간격, 식재밀도를 계획한다.

4-1-5-6. 관리실이 있는 경우 출입구는 관리실에서 보이는 곳에 계획한다.

4-1-5-7. 주차공간과 영역을 분리하고 차량, 오토바이 등의 접근을 막기 위한 볼라드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며, 보행으로 접근하는 공간과 분리시켜 배치한다.

4-1-5-8. 산책로는 전방시야를 확보하여 보행이 쉽고 예측 가능한 선형으로 계획하며, 전방 시야 확보가 불가능할 경우 안전거울을 설치한다.

4-1-5-9. 보행공간은 산책이 가능한 순환형 구조로 계획하고, 운동시설, 휴게 시설 등과 연계되도록 한다.

4-1-5-10. 보행로나 산책길 주변에는 낮은 관목을 식재하고 안쪽으로 지하고 2m 이상 교목을 식재하여 자연감시가 가능하도록 계획하며, 일정한 간격으로 바닥을 비추는 조명 또는 볼라드 조명을 설치한다.

4-1-5-11. 산책로 주변에는 밀집식재나 차폐 식재로 잠재적 범죄자의 은신 장소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한다.

4-1-5-12. 지역 주민들의 활동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다양한 운동 시설, 휴게시설을 계획하며, 다른 이용자들의 활동에 방해가 되는 않도록 별도의 구역을 지정해 배치한다.

4-1-5-13. 어린이 놀이시설 주변에는 보호자가 휴식하거나 함께 할 수 있는 공간 및 시설을 배치하며, 시각적 차폐나 은폐공간이 형성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4-1-5-14. 공원에는 공간의 특성에 맞는 가로등, 볼라드 조명, 국부조명, 바닥조명, 고보조명, 수목투사등과 같은 다양한 조명계획을 고려한다.

4-1-5-15. 공원 내 취약지역의 경우 방범용 감시카메라, 비상벨 등을 계획한다.

#### 4-1-6. 수변공간

4-1-6-1. 출입구나 경계부는 포장이나 색채의 차별화, 바닥레벨의 변화, 상징물, 조명등을 설치하여 공간의 전이를 명확하게 인지하고 영역성을 발휘하도록 계획한다.

4-1-6-2. 벤치, 파고라, 화장실, 운동시설 등 시설물은 주요 동선에 인접하여 배치하여 자연적 감시가 이루어지도록 계획한다.

4-1-6-3. 산책로는 충분한 가시권 확보를 위하여 수풀 또는 하천으로부터 3m 이상 거리를 두어 계획한다.

4-1-6-4. 산책로와 자전거 도로를 분리하여 충돌사고를 방지하고, 보행 및 자전거 이용량을 충분히 처리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1-6-5. 주요 시설, 현재 위치 등을 표기한 안내 표지판을 설치 하여 공원구조를 직관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산책로 코스별로 번호를 매겨 위치 확인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1-6-6. 산책로 및 시설물 주변에 가로등을 설치하며, 방범용 감시 카메라, 비상벨과 같은 보안시설을 설치하여 이용자들의 불안감을 감소시킨다.

4-1-6-7. 수변공간 내에는 필요시 정해진 장소로만 출입하거나 접근 할 수 있도록 울타리나 조경을 설치한다.

4-1-6-8. 필요시 집중호우, 또는 심야시간 등 특정 시간대 이용을 제한하며, 이용시간을 안내판에 명시한다.

4-1-6-9. 시설물에는 관리자의 연락처가 표기된 번호를 부여하여 인식 및 관리가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 4-1-7. 공중화장실

4-1-7-1. 화장실은 외진 곳이 아닌 주변에서 잘 보이는 곳에 배치한다.

4-1-7-2. 외관은 부드러운 색채, 형태, 소재를 사용해 주변과 조화되도록 계획한다.

4-1-7-3. 천장부, 벽면개방 등을 통해 자연채광을 극대화하여 유입되는 자연광으로 밝은 분위기를 연출한다.

4-1-7-4. 화장실 각 칸에는 위급사항 시 신속한 대처를 위한 비상벨 설치를 계획한다.

4-1-7-5. 비상벨이 눌릴 경우 외부에 도움을 요청 할 수 있도록 출입문 상단에 비상벨과 연동되는 경광등을 설치하고, 안내사인을 부착한다.

4-1-7-6. 각 큐비클 칸막이 하부공간에 불법촬영 방지용 안심스크린 설치를 계획한다.

4-1-7-7. 위생시설은 공공(유니버설) 디자인이 적용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을 설치한다.

4-1-7-8. 쾌적한 환경이 유지되도록 적정 조도의 조명을 계획한다.

4-1-7-9. 화장실 출입구는 위험상황에서 신속하게 나올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한다.

#### 4-1-8 상업(숙박)·유흥지역 가로 및 골목길

4-1-8-1. 야간에 범죄취약 공간이 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명과 출입 통제 시설을 설치한다.

4-1-8-2. 보행자의 이동을 방해하고, 사각지대를 유발하는 불법 주정차 및 불법 광고물에 대해 단속한다.

4-1-8-3. 수명이 긴 조명을 사용하고, 일출과 일몰을 자동으로 인식하는 자동 조명장치를 설치한다.

- 4-1-8-4. 비상시 외부 목격자의 신고편의를 위하여 상호명을 크게 설치하고, 간판에서 건물 내부로의 침입을 막기 위해 이격 설치를 권장한다.
- 4-1-8-5. 범죄에 취약한 환경의 가로는 방법용 감시카메라, 비상벨, 반사경 등을 설치한다.
- 4-1-8-6. 방법용 감시카메라 주변에는 충분한 조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가로등과 연계하여 설치하며, 보행 중에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1-8-7. 일정 시야범위를 확보할 수 있도록 차폐감을 형성하는 시설은 제거하고, 필요한 담장은 개방감을 확보한다.
- 4-1-8-8. 건물과 건물사이의 이격 공간 등에서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 4-1-8-9. 주민 참여를 통한 꽃길 조성, 화분 설치, 녹화 등 골목길 환경을 개선한다.
- 4-1-8-10. 벽화 및 바닥 그래픽 참여를 통해 이용하고 싶은 골목 환경을 조성한다.
- 4-1-8-11. 골목길 내 유휴공간은 주민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 휴게시설, 주민운동시설을 설치하여 활성화를 유도한다.
- 4-1-8-12. 골목길 주변 빈집이나 폐가는 주민 휴게공간이나 감시 초소 등으로 정비하여 잠재적 범죄 가능성을 차단한다.

## 제2절 아파트 단지

### 4-2-1. 출입구

- 4-2-1-1. 단지 출입구는 영역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문주, 미술품, 식재계획 등 입체형 구조물과 바닥 포장패턴 변화와 같은 평면적 변화를 고려하여 계획한다.
- 4-2-1-2. 건축물 출입구 위치는 자연 감시가 쉽고 이용자의 편리성이 뛰어난 곳으로 선정하며, 수목이나 환풍 설비, 옥외광고물 등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 4-2-1-3. 건축물의 출입구나 현관은 방법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동작 감응식 조명설치를 권장한다.
- 4-2-1-4. 주동 출입구는 주변보다 밝은 조명을 설치하여 야간에 식별이 용이하도록 하고, 출입구 주변에도 조명을 설치한다.
- 4-2-1-5. 출입구에 차량 출입차단기와 경비실, 방법용 감시카메라 등을 함께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4-2-2. 출입문

- 4-2-2-1. 현관과 창문은 침입 방어성을 갖춘 인증제품으로 사용한다. 신문·우유투입구 등은 설치하지 않도록 하되 부득하게 설치한 경우 출입문을 열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4-2-2-2.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나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4-2-2-3. 출입문은 피난시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한다.

4-2-2-4.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 등 투시형 재료를 사용하고, 내부 또는 외부로의 시선을 감소시키는 필름부착이나 광고물 부착을 지양한다.

4-2-2-5. 아파트 옥상 출입문은 범죄예방 및 비상대피를 위하여 자동계폐장치를 설치하여, 평상 시 출입을 통제 하되 재난 시 대피가 가능하도록 한다.

### 4-2-3. 승강기, 복도, 계단

4-2-3-1. 주동 현관 입구에서 승강기 출입구가 보이도록 계획한다.

4-2-3-2. 피난 승강기를 제외한 승강기는 내부에서 보이는 승강기를 권장한다.

4-2-3-3. 승강기 내부에는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하고, 벽면에는 전면거울 설치를 권장한다.

4-2-3-4. 계단실에는 외부공간에서 자연적 감시가 가능하도록 창호를 설치한다.

4-2-3-5. 승강기, 홀, 복도, 계단실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 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4-2-4. 건물외벽

4-2-4-1. 건물 외벽에 설비시설(가스배관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어(1.5m 이상) 외부인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4-2-4-2. 수직배관 설비는 지표면에서 지상 2층 또는 옥상에서 최상층으로 배관을 타고 오르거나 내려올 수 없는 구조(방범용 가시덮개 등 설치)로 한다.

4-2-4-3. 건물 외부의 옥외배관은 사람들의 통행이 많은 보행로, 도로변, 인접세대에서 자연감시가 가능한 방향으로 설치하도록 한다.

4-2-4-4.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4-2-4-5. 창고 등 부속시설은 발코니, 창문 등에서 충분한 이격 거리를 두어 외부로부터 침입에 안전하도록 계획한다.

4-2-4-6. 건축물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수목을 식재하여 창문을 가리거나 수목을 타고 건축물 내부로 범죄자가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2-4-7.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 보행이 가능한 정도의 공간이 생기는 경우 자연감시 또는 접근통제의 환경을 조성한다.

4-2-4-8. 건물하부 구조를 필로티로 계획할 경우, 시야가 차단되는 공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필로티 내 기둥 설치가 부득이한 경우 자연감시 및 감시카메라의 시야범위를 넓힐 수 있는 원형기둥으로 설치하는 것을 권장한다.

## 4-2-5. 주차장

4-2-5-1. 주차장 입구에는 가급적 접근통제시설(경비실, 차량통제 시스템 등)을 설치한다.

4-2-5-2. 지하 최상층 및 출입구 주변 개방된 공간에 여성 및 장애인 전용 주차장 설치를 계획한다.

4-2-5-3.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둥과 벽면을 규칙적으로 배치하고, 기둥에는 번호를 부여하여 주차위치 인식이 용이하도록 계획한다.

4-2-5-4. 지하주차장 주동 출입구 및 내부벽면 마감은 밝은 색채 위주로 하여 이용자가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도록 계획한다.

4-2-5-5. 방범용 감시카메라는 사각 없이 차로와 주차구획을 모두 감시 할 수 있도록 설치한다.

4-2-5-6. 지하주차장 차로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이나 자체 경보음을 울리는 비상벨 설치를 고려하며,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2-5-7. 지하주차장은 조명이 어두워 불안을 느끼지 않도록 천창, 선큰 등의 설치를 권장한다,

4-2-5-8. 주차장 조명은 충분한 조도를 유지하도록 하며, 눈부심 방지 조명을 계획한다.

4-2-5-9. 주차장의 구조 및 설비기준에 대하여는 ‘주차장내의 방범 설비설치 세부지침’(국토교통부 훈령)에 따른다.

## 4-2-6. 경비실

4-2-6-1. 경비실은 시설 전체를 조망 할 수 있는 곳에 위치 하여야 하며, 외부인의 눈에 띄는 곳에 배치한다.

4-2-6-2. 경비실은 필요시 각 방향으로 조망이 가능하도록 3면 이상 투시형 구조로 설계하며, 경비실 주변의 시설과 조경은 시야확보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4-2-6-3. 경비실에 통합 방범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을 권장한다.

4-2-6-4. 경비실 및 관리실 등 주민들의 통행이 많은 장소에 무인 택배 보관함 설치를 권장한다.

## 4-2-7. 복리시설

4-2-7-1.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범죄행동을 가리거나 시야차단이 되지 않도록 투시형 담장 또는 낮은 관목류를 식재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4-2-7-2. 단지내 상가는 아파트와 영역성 구분을 통해 외부인의 단지 진입이 제한되도록 계획하며, 독립적인 출입구, 계단, 복도, 화장실 설치를 계획한다.

4-2-7-3. 어린이놀이터는 일조가 양호하고 주민에 의해 보호가 가능한 곳에 배치하고, 방법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4-2-7-4. 어린이놀이터의 배치는 차량과 보행자의 관찰 기회를 최대화 할 수 있는 곳으로 하며, 놀이터의 구조물은 시야확보를 저해하는 차폐 구조를 지양한다.

4-2-7-5. 복리시설에 야간감시가 될 수 있도록 조명시설을 계획한다.

### 제3절 주택(단독,다가구,다세대), 준주택(오피스텔,고시원,기숙사)

4-3-1. 대문 및 현관 등 출입구는 도로 또는 통행로에서 직접 보이는 장소에 계획하여 자연감시가 이루어지도록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반사경이나 거울 설치를 권장한다.

4-3-2. 주출입구에는 방법용 감시카메라, 동작 감응식 조명설치를 권장한다.

4-3-3. 공동우편함, 택배보관함은 출입구 내외부에서 잘 보이는 곳에 계획한다.

4-3-4. 출입문에는 전자출입시스템(비밀번호) 또는 출입카드 등으로 출입문을 여닫을 수 있는 시스템을 설치한다.

4-3-5. 창문은 도로나 보행로를 향하도록 배치하며, 창문을 통해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벽면과 창문에 불필요한 도출물을 설치하지 않는다.

4-3-6. 창문 앞에는 시야를 차단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창틀, 유리, 안전잠금장치 등 창호재는 일정한 방어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사용을 권장한다.

4-3-7. 도어체인, 보조키, 투시경, 창문경보기, 비디오폰, 적외선 방법경보기, 충격진동감지기, 도어경보기, 경관사이렌, 유리방탄필름, 방법문 등을 적절히 사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4-3-8. 부속된 창고, 차고, 의료수거함, 쓰레기통 등은 발코니, 창문, 베란다에서 2m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4-3-9. 외벽에 설비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 창문 등 개구부와 1.5m 이상 거리를 이격시켜 설치하고, 옥외배관은 배관을 타고 오를 수 없는 구조(매립형, 방법용 배관커버 등)로 설치한다.

4-3-10. 수목은 건축물과 1.5m 이상 거리를 두고 식재하여 수목을 타고 건축물 내부로 침입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3-11. 주택 지붕을 통한 범죄자의 이동을 제한, 통제하기 위하여 건물지붕 처마와 처마사이는 3m이상 이격하는 것을 권장한다.

4-3-12. 전기, 가스, 수도 등 검침용 기기는 외부에 설치하여 세대 내에서 검침할 수 없는 구조로 계획한다.

4-3-13. 빈집털이 예방을 위해 IOT, 스마트폰 어플과 연동하여 전등이 점멸되는 안심스위치 설치를 권장한다.

4-3-14. 복합용도 건축물은 다른 용도에서의 출입을 통제하고 전용 출입구

설치를 권장한다. 오피스텔 전용 출입구는 ‘오피스텔 건축 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다.

#### 제4절 소매점(편의점)

4-4-1. 출입문에 설치하는 유리는 안전유리 등 투시형 재료를 사용 하고, 내부가 보이는 셔터 사용을 권장한다.

4-4-2. 건물 외부에 설치하는 광고물은 방범, 조명시설 기능을 방해 하지 않도록 한다.

4-4-3. 계산대는 배치계획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외부에서 상시 볼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4. 출입구 및 계산대 주변에 방범용 감시카메라 설치를 고려한다.

4-4-5. 상업시설의 출입구는 조명을 통하여 야간에도 자연적 감시가 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4-4-6. 편의점과 같이 24시간 운영되는 상점의 경우 위급 상황시 계산대가 차단되는 안전가드 설치를 고려하며, 경찰서 또는 사설경비업체와 상시 연결 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를 검토한다.

4-4-7. 편의점 내부와 외부에 방범시스템 설치에 관한 안내표지를 부착한다.

#### 제5절 문화·교육·노유자시설·관광휴게시설

4-5-1. 문화시설과 교육시설은 건축물 출입구 및 진입로가 감시될 수 있도록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4-5-2. 교육시설과 주변 주거지역을 연결하는 보행로의 조명은 상대방의 얼굴을 인식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고, 주간 및 야간에 자연감시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조성한다.

4-5-3. 노유자시설과 이와 연계된 활동공간에는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비상벨 과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4-5-4. 교육시설 및 노유자시설 주변의 보행도로, 교차로, 공공시설물은 원거리에서도 식별이 용이한 시인성 있는 색채 및 재료로 디자인한다.

4-5-5. 출입구가 건물 외벽에서 안쪽으로 후퇴 된 알코브형으로 계획될 경우에는 둔각으로 계획한다.

4-5-6. 건축물, 출입문 및 창문은 일정한 침입 방어 성능을 갖춘 인증제품을 설치하고, 화재 발생시를 대비하여 밖으로 열리는 구조로 한다.

4-5-7. 지하주차장의 주차구획은 사각지대가 생기지 않도록 배치하고 차로 및 주차구획을 감시 할 수 있도록 방범용 감시카메라를 설치한다.

4-5-8. 지하주차장에는 경비실과 연결된 비상벨을 설치하되 차로 또는 통로에 25미터 이내마다 일정간격으로 설치를 권장하며, 비상벨의 위치는 시각적으로 명확하게 인지될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제5장 주민 활성화 지원

5-1. 마을단위계획 수립시 주민 유대 강화를 위하여 동호회, 반상회, 주민행사 등 커뮤니티가 증진되도록 지원한다.

5-2. 커뮤니티 시설은 마을 입구나 중심 공간 등 주민활동을 고려 하여 접근과 감시가 용이한 곳에 배치하여 방범순찰 거점 역할이 가능 하도록 계획한다.

5-3. 커뮤니티 시설 입구에 보안등, 방범용 감시카메라, 비상벨 등을 설치하여 주민들이 안심하고 모일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며 눈에 띄는 밝은 색상의 외관 디자인을 계획한다.

5-4. 건축물 필로티 공간은 범죄 우범화를 막기 위하여 우편함, 무인택배보관함, 주민들의 이용을 유도하는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 하는 것을 고려한다.

5-5. 가로(골목길) 상업건물 1층에는 가로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는 상점이나 편의점 입점을 권장한다.

5-6. 방치된 공지, 공가, 공원, 휴게시설 등은 지역주민이 자주 이용 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전환하여 이를 통한 주변 감시와 이웃 간 커뮤니티를 증진시킨다.

5-7. 방범에 대한 주민들의 인식과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마련하고 지원한다.

5-8. 마을 순찰, 안심 귀가, 안전 모니터링, 안전진단, 골목길 활성화 등 주민 참여형 범죄예방 프로그램을 활성화한다.

5-9. 지역 경찰서, 파출소 등과는 MOU 체결을 통해 범죄 취약공간에 대한 순찰을 강화한다.

부칙(2019. 6. 14.)

이 가이드라인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참고자료】

### 용어의 정의

**생활공간** : 주민들이 주로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공간적 범위를 말한다

**접근통제** : 입·출구, 울타리, 조경, 조명 등 시설물을 적절히 배치하여 사람들이 보호공간에 들어오고 나가는 것을 통제하는 것을 말한다.

**영역성** : 어떤 지역에 대해 주민들이 자유롭게 사용함으로써 그들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가상의 영역을 의미하며, 이는 조경, 조명, 표지, 보도 형태, 울타리 등을 이용하여 일정지역에 대한 소유권을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자연적 감시** : 도로 등의 공적 공간에 대해 시각적 접근과 시각적 노출이 최대화 되도록 건축물 배치, 조경식재, 조명 등을 통하여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색온도** : 광원의 색을 절대온도(K)를 이용해 숫자로 표시한 것을 말한다.

**관목** : 높이가 2m 이내이고 주 줄기가 분명하지 않으며 밑동이나 땅속 부분에서부터 줄기가 갈라져 나는 나무

**교목** : 키가 8m이상 자라고, 곧은 줄기가 있으며, 줄기와 가지를 명확히 구분할 수 있고 중심 줄기의 생장이 현저한 나무를 말한다.

**지하고** : 수목의 줄기에 있는 가장 아래가지에서 지표면까지 수직거리를 말한다.

**조도** : 빛의 밝기를 나타내는 정도를 말한다.

**볼라드 조명** : 보행자용 도로나 잔디에 설치되는 기둥에 점등이 되는 것을 말한다

**국부조명** : 특정한 부분만을 조명하는 방법을 말한다.

**투사등** : 대상물 하부에 설치해 부각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설치하는 조명을 말한다.

**고보조명** : 조명에 필름을 붙여 바닥, 벽 등에 문자를 비추는 조명을 말한다.

**안심스크린** : 불법촬영을 막기 위해 공중화장실 칸막이 하단 틈새를 막기 위해 설치한 스크린을 말한다.

**공공(유니버설) 디자인** : 장애 유무, 연령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들이 편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하는 것을 말한다.

## 부 록

## 1.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시행 2015. 4. 1.] [국토교통부 범죄예방건축고시 별표 1]

## 2. 주차장내의 방범설비설치세부지침

[시행 2015. 8. 1.] [국토교통부 훈령]

## 3. 오피스텔 건축기준

[시행 2017. 5. 23.] [국토교통부고시 제2017-279호]

## 4. 충청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시행 2012.1.20.] [충청북도 훈령 제1287호, 2012.1.20, 전문개정]

## 5.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8.1.1] [환경부고시 제2017-261호, 2017.12.26, 일부개정]

## 건축물 창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

(제10조제8항제1호 및 제2호, 제11조제1호 및 제3호, 제12조제1항제2호, 제14조제3항 관련)

### 1. 창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연결체 충격원을 3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1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1.5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5mm 이하 이어야 한다.

### 2. 출입문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 연결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KS F 2638(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정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하중점 F1(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하중점 F2(3kN으로 재하) 변형량 20mm 이하, 하중점 F3(3kN으로 재하)는 변형량 10mm 이하 이어야 한다.

### 3. 셔터의 침입 방어 성능기준은 다음과 같다.

가. KS F 2637(문, 창, 셔터의 침입저항 시험 방법 - 동하중 재하시험)에 따라 강성체 충격원을 165mm이, 연결체 충격원을 800mm 높이에서 낙하하여, 시험체가 완전히 열리거나 시험체에 10mm 이상의 공간이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시험체의 부품 또는 잠금장치가 분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주차장내의 방법설비설치세부지침

**제1조(목적)** 이 지침은 주차장법시행규칙 제6조제1항제10호 및 제11조제2항에 따라 주차장에 설치·관리하는 방법설비설치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민원해소와 원활한 업무수행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사각지대의 방지)** 방법설비설치기준은 주차장내에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차장에 설치된 카메라 간에 상호감시체제로 사물의 움직임을 포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제3조(폐쇄회로텔레비전과 모니터 일치)**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수와 모니터 화면은 1:1로 대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이 다채널로 분할 가능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에는 폐쇄회로텔레비전과 녹화장치의 모니터수가 일치하는 것으로 본다.

1. 다채널의 폐쇄회로텔레비전 카메라 신호를 1대의 녹화장치에 연결하여 감시할 경우에 연결된 카메라 신호가 전부 모니터 화면에 표시되어야 하며 1채널의 감시화면의 크기는 최소한 4인치(대각선방향) 이상이 되어야 한다.
2. 다채널 신호를 표시한 모니터 화면은 채널별로 확대감시기능이 있어야 한다.
3. 녹화된 화면의 재생이 가능하며 재생할 경우에 화면의 크기조절기능이 있어야 한다.

**제4조(화질의 유지·관리)** 녹화장치의 저장해상도는 1채널당 최소한 320x240이상이어야 하며, 녹화된 화면을 반복하여 재생하여도 처음의 화질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제5조(자료보관)** 자료보관을 위한 저장장치의 용량은 촬영된 자료를 1개월 이상 보관하여야 하며, 촬영된 자료는 영상변조방지기능을 갖추고 저장되어야 한다.

**제6조(관리사무소)** 관리자 등이 상주하여 방법설비의 폐쇄회로텔레비전 모니터 화면을 항상 감시할 수 있도록 관리사무소(경비실 포함)를 운영하여야 한다.

**제7조(유효기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334호)에 따라 이 훈령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해야 하는 2018년 8월 18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오피스텔 건축기준

**제1조(목적)**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 및 별표1 제14호나목에 따른 오피스텔에 대한 건축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오피스텔의 건축기준)** 오피스텔은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한 구조이어야 한다.

1. 각 사무구획별 노대(발코니)를 설치하지 아니할 것
2. 다른 용도와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지상층 연면적 3천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은 제외한다)에는 오피스텔의 전용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할 것. 다만,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을 복합으로 건축하는 경우에는 건축주가 주거기능 등을 고려하여 전용출입구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사무구획별 전용면적이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 온돌·온수온돌 또는 전열기 등을 사용한 바닥난방을 설치하지 아니할 것
4. 전용면적의 산정방법은 건축물의 외벽의 내부선을 기준으로 산정한 면적으로 하고,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으로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용면적을 제외하며, 바닥면적에서 전용면적을 제외하고 남는 외벽면적은 공용면적에 가산한다.

가. 복도·계단·현관 등 오피스텔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

나. 가목의 공용면적을 제외한 지하층·관리사무소 등 그 밖의 공용면적

**제3조(오피스텔의 피난 및 설비기준)** 오피스텔은 화재 등 유사시 피난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주요구조부가 내화구조 또는 불연재료로 된 16층 이상인 오피스텔의 경우 피난층외의 층에서는 피난층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계단을 거실의 각 부분으로부터 계단에 이르는 보행거리가 40미터 이하가 되도록 설치할 것
2. 각 사무구획별 경계벽은 내화구조로 하고 「건축물의 피난·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19조제2항에 따른 벽두께 이상으로 하거나 45dB 이상의 차음성능이 확보되도록 할 것

**제4조(재검토기한)** 국토교통부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충청북도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규정

## 제1장 총칙

제1조(목적)이 규정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거나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영상정보를 운영·관리할 때 「개인정보보호법」 및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충청북도 및 그 소속기관이 준수해야 할 기준 및 절차 등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이란 용도별·지역별로 분산 설치되어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영상정보를 다양한 전송방식으로 CCTV통합관제센터에 전송하는데 필요한 시스템을 말한다.
2.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란 「개인정보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5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충청북도 및 그 소속기관(이하 “도 및 소속기관”이라 한다)을 말한다.
3.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란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업무담당 부서의 장을 말한다.
4. “개인영상정보”라 함은 영상정보처리기기에 의하여 촬영·처리되는 영상정보 중 개인의 초상, 행동 등 사생활과 관련된 영상으로서 해당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5. “개인영상정보처리자”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운용하기 위하여 스스로 또는 다른 사람을 통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도 및 그 소속기관을 말한다.
6.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란 개인영상정보처리자의 개인영상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여 책임지거나 업무처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사람으로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2조에 따른 지위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7. “CCTV통합관리”란 기관 내 또는 기관 간에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 관리 및 정보연계 등을 위해 용도별·지역별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 물리적으로 통합하여 관리 및 운영하는 것을 말한다.

8. “CCTV통합관제센터 “(이하 ” 통합관제센터 “라 한다)란 공공의 목적으로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일정한 하나의 장소에서 통합관리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추고, 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이용한 각종 사건·사고 예방 및 사후조치를 할 수 있는 시설 및 기능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도 및 소속기관이 공공안전, 사회질서 유지, 시설물 관리 등 사회공익을 목적으로 설치·운영하는 영상정보처리기와 통합관제센터의 설치·운영과 이를 통해 수집·처리하는 영상정보의 이용·제공 등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그에 따른다.

**제4조(개인영상정보 보호원칙)**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에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영상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목적에 적합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하여야 하며, 그 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할 수 없다.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의 처리방법과 종류에 따라 정보주체의 권리가 침해받을 가능성을 고려하여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방침을 공개하여야 하며, 열람청구권 등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의 사생활 침해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여야 한다.

**제5조(전담부서의 지정)**도 및 직속기관의 장은 영상정보처리기기 또는 통합관제센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에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2장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등

**제6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제한)**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법 제2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업무목적별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가능 지역은 별표 1과 같다.

**제7조(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수립 및 공개)**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을 수립하고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인터넷홈페이지에 지속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관리 방침의 내용 및 공개방법은 시행령제25조

와 제31조에 따른다. 방침을 변경한 경우에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사무의 위탁 등)**①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자는 시행령 제26조에 따라 영상정보보호에 필요한 전문장비, 기술, 인력을 확보한 다른 공공기관이나 전문기관에 업무를 위탁할 수 있다. 다만, 통합관제센터의 운영·관리와 개인영상정보자원 처리에 관한 업무전체를 위탁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업무를 제3자에게 위탁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제7조와 제12조에 따라 공개하여야 하고, 그 업무를 위탁받은 자가 영상정보를 조작·유출 등 오·남용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9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기준)**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설치기준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다른 법령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1. 설치목적에 맞는 표준화된 인증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2. 방법 등 다목적 용도로 활용이 가능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3. 주·야간 구분 없이 최적의 영상을 제공할 수 있도록 조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4. 영상정보저장 용량은 법과 규정에서 정한 기간 동안 영상정보를 저장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한다.
5. 통합운영·관리가 가능하도록 표준화된 기술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사유로 비표준 기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사업계획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6. 장비간 호환성을 보장받기 위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와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의 기술적인 문서(지침서, 매뉴얼)와 소프트웨어 개발 키트(SDK : Software Development Kit) 파일, 기타 개발도구 파일들을 확보해야 한다.
7. 「정보통신공사업법」 제14조에 따라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가 시공 및 유지보수를 하여야 한다.

**제10조(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유지보수, 개인영상정보보호 등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이하 “관리책임자”라 한다)를 지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관리책임자는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업무에 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개인영상정보 보호 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개인영상정보 처리 실태 및 관행의 정기적인 조사 및 개선
3. 개인영상정보 처리와 관련한 불만의 처리 및 피해구제
4. 개인영상정보 유출 및 오용·남용 방지를 위한 내부통제시스템의 구축
5. 개인영상정보 보호 교육 계획 수립 및 시행
6.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보호 및 파기에 대한 관리·감독
7. 그 밖에 개인영상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업무

③ 법 제31조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 보호책임자가 개인영상정보 관리책임자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제11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①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거나 목적 변경에 따른 추가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1. 「행정절차법」에 따른 행정예고의 실시 또는 의견청취
2. 해당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로 직접 영향을 받는 지역 주민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설명회, 설문조사 또는 여론조사

② 설치장소별로 사전의견을 수렴하는 방법의 예시는 별표 2와 같다.

**제12조(안내판의 설치 등)**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영상정보처리기기가 설치·운영 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 설치목적 및 장소
2. 촬영범위 및 시간
3. 관리책임자의 성명 또는 직책 및 연락처
4.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 수탁하는 사람의 명칭 및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안내판은 정보주체가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누구라도 용이하게 판독할 수 있게 설치되어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경우에도 설치목적 등 통합관리에 관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1항에 따라 안내판에 설치하여야 한다.

④ 안내판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시행령 제24조제2항부터 제4항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안내판 설치방법은 별표 3과 같다.

**제13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조작 및 기능 제한)**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관계없는 영상정보의 획득을 위해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회전·줌인기능 등을 설정해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방법 등 공익목적으로 영상정보를 획득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운영하는 경우 음성정보를 수집하여 저장해서는 아니 되며, 녹음기능은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조치를 위해 방법용으로 설치된 비상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영상정보처리기기 등의 설치·운영에 대한 점검)**①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리책임자는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유지보수와 운영관리 등을 전담할 부서(이하 “전담부서”라 한다)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1. 기기 및 시스템의 이력관리
2. 정기점검 및 수시점검 항목관리
3. 기기 및 시스템의 장애처리 이력관리
4. 장애처리 매뉴얼
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전담부서는 자체 전담반을 구성하거나 전문업체를 선정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영상정보처리시스템을 24시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③ 시스템별 주요점검 내용은 별표 4와 같다.

### 제3장 개인영상정보의 처리

**제15조(개인영상정보의 이용 및 제3자 제공 제한)**① 영상정보처리기기운영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동의를 얻은 경우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그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

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영상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영상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법 제7조에 따라 구성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급박한 재난상황, 피해자 구호 등 공익목적의 신속을 요하는 경우

7.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범죄의 수사과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10. 형(刑)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제1항 각 호에 해당하여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열람·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의 목적외 이용 및 제3자제공 대장을 작성하여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법령상 요청근거 여부

2. 보유 목적외 이용·제공이 가능한 예외사항 여부

3. 요청한 법적 근거와 이용 목적의 타당성

4. 문서에 의한 요청 여부

5. 제공된 영상정보의 안전조치 수행 여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6호의 공익목적으로 신속한 영상정보의 이용·제공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통합관제센터 장의 승인을 받아 자료의 사본을 열람·제공할 수 있다. 단, 사후에 소속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후 승인을 받지 못하는 때에는 제공한 자료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한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를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보 또는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인터넷홈페이지에 게재할 경우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여야 한다.

**제16조(개인영상정보의 보관 및 파기)**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



보파일의 보유기간, 처리목적 등을 반영한 개인영상정보 파기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경우에는 내부 관리계획에 개인영상정보 파기계획을 포함하여 시행할 수 있다.

② 개인영상정보 파기계획에 명시한 보관 기간이 만료된 개인영상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관 기간을 개인영상정보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④ 개인영상정보의 파기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개인영상정보가 기록된 출력물(사진 등) 등은 파쇄 또는 소각
2. 전자기적(電磁氣的) 파일 형태의 개인영상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으로 영구 삭제

**제17조(이용·제3자 제공·파기의 기록 및 관리)**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개인영상정보를 수집 목적 이외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이용하거나 제공받은 자(공공기관 또는 개인)의 명칭
3. 이용 또는 제공의 목적
4. 법령상 이용 또는 제공근거가 있는 경우 그 근거
5. 이용 또는 제공의 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6. 이용 또는 제공의 형태

②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가 개인영상정보를 파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에 다음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파기하는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2. 개인영상정보 파기일시 (사전에 파기 시기 등을 정한 자동 삭제의 경우에는 파기 주기 및 자동 삭제 여부에 대한 확인 시기)
3. 개인영상정보 파기 담당자

**제18조(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① 정보주체는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처리

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 열람 또는 존재확인(이하 “열람 등”이라 한다)을 별지 제3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존재확인, 열람) 청구서에 따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보주체 자신이 촬영된 개인영상정보 및 명백히 정보주체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영상정보에 한한다.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자가 정당한 자인지를 별표 5의 절차에 따라 신분증 및 별지 제4호서식의 위임장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신청인에게 별지 제5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열람, 일부열람, 열람연기, 열람거절) 통지서 및 별지 제6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결과 통지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10일 이내에 서면 등으로 거부 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2. 개인영상정보의 보관기간이 경과하여 파기한 경우
3. 그 밖에 정보주체의 열람 등 요구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⑤ 개인영상정보처리자가 제3항과 제4항에 따른 조치를 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요구한 정보주체의 성명 및 연락처
2. 정보주체가 열람 등을 요구한 개인영상정보 파일의 명칭 및 내용
3.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의 목적
4. 개인영상정보 열람 등을 거부한 경우 그 거부의 구체적 사유
5. 정보주체에게 개인영상정보 사본을 제공한 경우 해당 영상정보의 내용과 제공한 사유

⑥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영상정보의 파기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제1항에 따라 보존을 요구하였던 개인영상정보에 대하여만 가능하다. 이때 해당 개인영상정보를 파기 조치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별지 제2호서식의 개인영상정보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정보주체 이외의 자에 대한 개인영상정보 보호)개인영상정보취급자**

가 제18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열람 등 조치를 취하는 경우,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되는 정보주체 이외의 자의 개인영상정보를 알아볼 수 없도록 보호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20조(개인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조치)**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법 제29조 및 시행령 제30조제1항에 따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처리를 위한 행정안전부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에 따른 내부 관리계획의 수립·시행
2. 개인영상정보에 대한 접근 통제 및 접근 권한을 제한하여야 하며, 영상정보 접근내역에 대한 로그를 관리하여야 한다.
3. 개인영상정보를 안전하게 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의 적용 (네트워크 카메라의 경우 안전한 전송을 위한 암호화 조치, 개인영상정보파일 저장시 비밀번호 설정 등)
4. 처리기록의 보관 및 위조·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 (개인영상정보의 생성 일시 및 열람할 경우에 열람 목적·열람자·열람 일시 등 기록·관리 조치 등)
5. 개인영상정보의 안전한 물리적 보관을 위한 보관시설 마련 또는 잠금장치 설치

② 저장된 개인영상정보의 재생을 엄격히 금지하여야 한다. 다만, 범죄수사나 증거확보 등 공익 목적을 위한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1조(교육의무)**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개인영상정보처리취급자에 대해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을 포함한다) 영상정보 보호를 위한 제반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은 자체적으로 실시하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2조(비밀유지 의무)**① 개인영상정보를 취급하거나 취급하였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개인영상정보를 누설 또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개인영상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는 사람에 대한 업무의 인수·인계를 철저히 관리·감독하여야 하며, 개인영상정보를 처리하였던 관제요원에 대해서는 비밀유지의무 등에 대한 서약서를 반드시 징구하

여야 한다.

**제23조(개인영상정보 및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점검)**①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이 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다음 해 3월 31일까지 그 결과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통보하고 시행령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영상정보처리기의 운영·관리 방침에 열거된 사항
2. 관리책임자의 업무 수행 현황
3. 영상정보처리기의 설치 및 운영 현황
4. 개인영상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파기 현황
5. 위탁 및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현황
6.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한 조치 현황
7. 기술적·관리적·물리적 조치 현황
8. 영상정보처리기 설치·운영의 필요성 지속 여부 등

② 개인영상정보처리자는 제1항에 따른 개인영상정보 및 개인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자체점검을 완료한 후에는 그 결과를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야 한다.

## 제4장 통합관제센터의 구축·운영 등

**제24조(통합관제센터의 구축)**①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제를 위하여 독립된 공간에 구축하여야 한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관제실, 장비실, 회의실, 운영실, 휴게실, 사무실 등으로 구성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의 장소와 시설은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여 구축하여야 한다.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의 통합관제센터 연계)**① 제6조에 따라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는 통합관제센터로 물리적으로 통합하고 연계하여야 한다.

② 영상정보처리기를 교체 또는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연계에 따른 효율성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국가보안 등 특수상황인 경우에는 연계하지 않을 수 있다.

**제26조(관제의 범위 등)**① 통합관제센터에 수용되는 모든 영상처리기기의 영상정보는 실시간으로 관제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해당기관과 협의를 통하여 관제의 범위 등을 별도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는 365일 24시간 운영하여야 하며, 비상시 신속한 합동대응을 위해 유관기관간 비상연락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③ 제1항부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설치 목적에 따른 운영시간 외의 야간 및 주말에는 방법 등 공익용으로 관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27조(통합관제센터의 역할)**① 통합관제센터는 모든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기능을 통합·연계하고 실시간 관제 등 영상정보처리기기 관련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범죄 및 재난·재해 발생 시 유관기관과 영상정보를 공유하여 신속한 합동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는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목적별 서비스 외에 지역 특성에 맞는 관제업무를 통합·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제28조(통합관제센터 운영협의회 구성 등)**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통합관제센터 내에 설치된 각종 영상정보처리기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경찰 등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각 기관별 업무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②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기관은 제1항에 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한 유관기관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통합관제센터운영협의회를 구성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안전한 통합관리를 위한 내부규정 마련, 심의
2. 통합관리 예산 또는 인력 협의 조정
3. 정기적인 보안 점검 및 내부감사 실시
4. 영상정보의 보유목적 이외의 이용·제공시 심의
5. 통합 관리되는 영상정보처리기기의 모니터링 수행인력 선발 시 자격 심의
6. 그 밖에 통합관리에 필요한 사항 심의·조정 등

**제29조(인력 확보 등)**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의 장은 통합관제센터 운영에 필요한 관제전담인력 및 유관기관 인력을 확보하여 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업무는 외부 전문요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관제전담요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라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

③ 관제전담요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 징구 및 업무 중 취득한 영상정보보호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영상정보처리기기의 관제에 경찰청, 교육청 등 유관기관의 인력 및 예산지원이 필요한 경우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지원을 요청 할 수 있다

**제30조(관제전담요원의 근무)**① 관제전담요원의 근무는 교대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기관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으로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② 근무조건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계 법률이 정한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관제전담요원은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에 따라 영상정보처리기에 대한 관제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CCTV통합관제센터 근무자 수칙 은 별표 6과 같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관제전담요원은 근무 중 범죄, 사고, 재난, 재해 등을 발견한 경우에는 경찰서(112 지령실), 재난 상황실 등 해당 업무 부서에 신속히 통보하여야 한다.

**제31조(통합관제센터간 상호운용성 확보)**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기관은 다른 통합관제센터간 영상정보의 효율적 연계를 위하여 상호운용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제32조(출입자 통제 등)**① 통합관제센터를 운영하는 부서의 장(이하 “통합관제센터장” 이라 한다)은 통합관제센터를 통제(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인가받은 사람(이하 “고정출입자” 라 한다)외의 출입을 엄격히 통제(제한)하여야 한다. 고정출입자 이외의 출입자에 대한 기록관리는 별지 제7호서식의 출입자통제대장에 의한다.

② 고정출입자외에 통합관제센터를 방문·출입하고자 하는 사람은 통합관제센터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통합관제센터장은 근무자의 근무 교대(종료)시 근무자 및 방문 출입자에 대한 보안검색을 실시하여 개인영상정보자료가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④ 통합관제센터장은 일반인이 견학 등 목적으로 통합관제센터를 방문할

경우 적절한 보안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33조(유관기관과 연계 시 보안대책)**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기관은 경찰, 교육청 등 유관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들과 시스템 연계시 전용회선 사용, 방화벽 설치 등 필요한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34조(권한의 수입 등)** 통합관제센터를 운용하는 기관은 통합관제센터의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중에 발생하는 사건사고 및 사생활침해 등 각종 민원과 관련된 문제의 처리에 대한 권한을 경찰서, 교육지원청 등과 업무협약에 의하여 위임할 수 있다.

부 칙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2. 1. 20 훈령 제1342호)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 설치·관리 권고기준

[시행 2018. 1. 1.] [환경부고시 제2017-261호, 2017. 12. 26., 일부개정.]

환경부(환경보건정책과) 044-201-6764

**제1조(목적)** 본 고시는 가로등의 효율적 설치 및 관리에 의하여 야간 도로 이용자 및 보행자의 통행 안전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에 의해 발생하는 에너지 비효율과 시각적 불편함을 방지할 수 있는 참고기준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본 고시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제2조제2호에 의해 정의된 조명기구 중 동 법의 시행령 제2조제1호의 가목에 해당하는 공간을 비추는 발광기구 및 부속장치의 설치 및 관리에 적용한다.

이 기준과 관련된 규격은 다음과 같다.

KS A 3701:2007 도로 조명 기준

KS C 7658:2011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8000:1992 조명 기구 통칙

KS C 8010:1999 배광 측정 방법(도로조명기구)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 조명시설편(2012.11 개정고시, 국토해양부)

**제3조(기본 원칙)**① (산란광 저감) 산란광 발생 방지를 위하여, 설치된 조명기구에서 되도록 수직각 90° 이상으로의 상향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침입광 저감) 조명기구가 설치된 주변에 주거지 등 조명시설의 영향을 받는 대상이 위치하는 경우, 조명기구로 인하여 과도한 침입광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글레어 저감)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된 빛이 도로이용자의 시각능력 저하를 일으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제4조(용어의 정의)**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가로등) 『도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로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② (보도등) 가로등과 함께 도로에 인접한 보도를 조명하는 조명기구를 의미한다.



③ (빛공해) 인공조명의 부적절한 사용으로 인한 과도한 빛 또는 비추고자 하는 조명영역 밖으로 누출되는 빛이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생활을 방해하거나 환경에 피해를 주는 상태를 말한다.

④ (상향광) 조명기구를 설계상의 정상 상태로 설치했을 때, 조명기구 광중심을 통과하는 수평선을 포함한 위쪽 방향으로 방출되는 빛을 의미한다.

⑤ (산란광)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에서 방사되어 기체분자, 연무질, 입자상 물질 등 대기 구성 물질을 통과한 가시광선 및 비가시광선의 산란으로 인해 관측 방향의 밤하늘이 밝아지는 현상이다.

⑥ (침입광) 옥외에 설치된 인공조명으로부터 빛이 새어나와 조명 영역을 벗어나 조명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할 영역을 침범하는 빛을 의미한다.

⑦ (글레어) 시야 내에 높은 휘도나 큰 휘도대비가 주어지는 경우에 발생하는 시지각적 장애 현상으로 사물의 시각적 인지능력 저하를 일으키는 불능글레어와 심리적인 불편함 및 불쾌감을 주는 불쾌글레어로 구분된다.

⑧ (임계치 증분) 도로조명에 따른 불능 글레어의 규제 정도를 수치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그 값이 작을수록 글레어는 줄어든다.

**제5조(설치 기준)** 빛공해 방지를 위한 가로등의 선정 및 설치 등의 권고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설치 장소) 가로등의 설치 장소는 차량의 교통 및 보행자 통행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장소이다.

② (조명기구 선정) 조명시설의 설치 계획 단계에서 조명 제공에 의한 안전성 확보 및 빛공해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빛공해 방지기준을 확인하고, 가로등의 선정 과정에서 이를 참고하도록 한다.

가. 빛공해 방지기준 부합 여부 및 상향광 발생 정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KS규격(KS C 8000, KS C 8010 및 KS C 7658)에 명시된 배광 측정 방법에 의해 얻어진 가로등의 공인시험기관 배광 측정데이터를 적용하여 조도계산 및 상향광 등급, 컷오프 분류를 실시한다.

나. 가로등의 상향광에 의해 발생하는 산란광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명환경관리구역별로 표 1의 상향광 등급(U등급)을 갖는 가로등을 사용한다. 상향광 등급의 선정은 부록 1을 따른다.

표 1. 조명기구에 대한 상향광 등급

구분	조명환경관리구역			
	제 1 종	제 2 종	제 3 종	제 4 종
최대 허용 상향광 등급 (U등급)	U0	U1	U2	U3

다. 가로등으로부터의 침입광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제 적용하려는 가로등의 설치위치와 주변 건물 창문위치에 따라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계산을 실시하고, 창문에서의 연직면 조도 최대값이 표 2의 빛방사 허용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이 조도계산시에 보수율\*은 적용하지 않는다(보수율 1.0 적용).

\* 보수율(MF)은 조명시설을 일정 기간 사용한 시점에서 조도와 처음 새로 설치했을 때의 조도의 비로 정의한다(MF=Em/En, Em:유지조도, En:초기조도)침입광이 최대가 되는 초기 설치 상황의 조도를 반영하기 위하여 조도계산 시 보수율을 1.0으로 적용한다.

표 2. 빛방사허용기준\*(『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

조명기구	구분	적용시간	평균값/ 최대값	주거지 조명환경관리구역				단위
				제1종	제2종	제3종	제4종	
주거지 연직면 조도*		해진 후 60분 ~ 해뜨기 전 60분	최대값	10 이하		25 이하	lx (lm/m²)	

\* 주거지 연직면 조도는 해당 조명기구로부터 방사되는 빛에 의한 「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4에 따른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창면에서의 연직면 조도를 말한다.

이 조도계산 과정에서 설치장소의 도로 폭은 알려져 있으나, 창문의 위치 등을 일일이 지정하기 어려운 경우, 주거지 연직면 조도에 대한 계산은 부록 2의 절차를 따르고, 계산 결과가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만족하는 가로등을 선정한다.

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기구의 설치 구역 내에 반지하 공간 등 바닥면과 가까운 위치에 창문이 위치하는 공간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바닥면과 동일한 높이부터 계산 영역이 시작되도록 한다.

후사광의 영향을 계산할 때, 조명 계산 영역은 조명기구 암의 길이, 등주 위치 및 도로 구조를 고려하여 조명기구 광중심과의 거리가 최소 3m 이상이 되도록 한다.

라.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글레어 방지를 위한 기준은 KS 기준(KS A 3701 도로조명기준)에 제시된 임계치증분(TI)에 대한 제한 기준을 따른다. 임계치증분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 또는 운전자를 제외한 기타 도로이용자에 대한 글레어 방지를 위하여 측정된 조명기구의 배광특성이 컷오프형 분류 이상인 조명기구를 사용한다. 조명기구의 컷오프 분류는 부록 3을 따른다.

③ (설치방법) 가로등의 설치방법은 등주에 시설하는 방식을 기본으로 하며, 필요시 전주 등의 구조물에 부착하는 등 다른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설치시의 경사각도는 원칙적으로 0도가 되도록 하며(KS A 3701:2007 도로조명기준 - 경사각도는 0° ~5° 사이로 규정) 부득이하게 경사각을 주어 설치하는 경우에는 제2항 ‘다’ 항목의 조도계산시에도 예정된 경사각을 적용하여 조도를 계산하여야 한다. 경사각 적용에 의해 산란광 및 글레어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제어할 수 있는 별도의 장치를 부착하여야 한다.

**제6조(유지관리)** 설치된 가로등에 의해 발생하는 빛공해를 방지하기 위한 유지 관리 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확인 항목) 본 고시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로등의 유지 보수 관리자는 조명시설의 설계 시부터 관리 단계에 이르기까지 빛공해와 관련된 항목들(산란광, 침입광, 글레어)의 발생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 (측정) 빛공해 관련 항목 중 침입광 발생과 관련된 민원이 제기되거나 설치환경이 변화하여 침입광의 발생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침입광 발생 지점에 대하여 ‘빛공해 공정시험기준’의 ‘주거지 연직면 조도 측정방법’에 따라 주거지 창면에 대한 연직면 조도 측정을 실시한다. 측정 후 표 2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적용하여 결과 값에 대한 만족여부를 확인한다.

③ (사후 조치) 설치된 가로등에 의하여 주거지 연직면 조도기준을 초과하는 값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의 조정, 경사각의 조정, 조명기구 글로브 및 렌즈 등에 대한 도색, 차광판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한다. 개선 후에는 제2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재측정을 실시하여 사후 조치에 의한 개선 여부 및 새로운 문제의 발생 여부를 확인한다.

④ (조명의 측정 및 기록) 조명기구에 대한 기록은 향후 시설의 유지 관리에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설치가 완료된 직후에 선정된 가로등에 대한 성능 데이터와 함께 빛공해 관련 항목(상향광 등급, 조도계산 결과, 컷오프 분류 등급)을 기록해야 한다. 가로등의 설치 후 민원이 발생하거나, 빛공해의

발생이 확인되는 구역에 대해서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확인 및 측정을 실시하고 측정값 및 사후조치에 의한 개선 결과를 기록해야 한다.

⑤ (도로조명의 운영) 도로 교통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소비 전력 및 빛공해 발생을 줄이기 위해 감광 등의 조절방법을 통하여 조명의 밝기를 조절할 수 있다. 조절 대상과 밝기의 정도, 조절 방법 등은 ‘도로안 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조명시설편’ 을 따른다.

**제7조(재검토기한)** 환경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2018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2017-261호, 2017. 12. 26.>

이 고시는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